

- 공원녹지과는 구 일반회계예산의 1.68%인 92억 6,910만 7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57.48%인 33억 8,323만원이 증액됨.
- 주요 증가 내역은 공원시설확충 및 유지관리사업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비 보상금' 20억, '수목식재 사후관리' 인건비 등으로 7,810만 5천원, 생활권주변 녹지확충 사업의 '시설녹지 정비 사업', '마을마당 및 쉼터 정비' 등으로 4억 4천만원, 하천변 관리 사업인 '홍제·불광천 생태숲 조성' 5억 8,800만원, '공기청정숲 조성', '마포, 걷기좋은길 10선 선정' 사업비 등 5억 3,2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감소 내역은 공원시설 유지관리 사업의 시설비 2억 3천만원, 가로수 관리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의 시설비 4,000만원이 감액됨.

#### 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총 계	2,916,943	3,299,176	△382,233
도시계획과	2,916,943	3,299,176	△382,233
500 보조금	173,400	3,092,600	△2,919,200
510 국고보조금등	173,400	3,092,600	△2,919,200
511 국고보조금등	173,400	3,092,600	△2,919,200
511-03 기금	173,400	3,092,600	△2,919,2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743,543	206,576	2,536,967
710 보전수입등	2,743,543	206,576	2,536,967
711 잉여금	2,743,543	206,576	2,536,967
711-01 순세계잉여금	2,743,543	206,576	2,536,967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도시계획과에서 총괄 관리하며 기금 및 순세계잉여금 29억 1,694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감액됨.

## 5. 부서별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총 계	1,972,149	0	1,972,149
도시계획과	1,955,649	0	1,955,649
선진 교통체계 확충	236,760	0	236,760
주차편익시설 건설 및 주차난 해소 (주차장특별회계)	236,760	0	236,760
발전소주변지역 발전 도모	1,718,889	0	1,718,88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0,000	0	20,000
예비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698,889	0	1,698,889
환경과	16,500	0	16,500
에너지 절약 및 가스시설 개선	16,500	0	16,500
에너지 절약 및 가스시설 개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6,500	0	16,500

- 도시계획과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건고싶은거리, 어울마당로 일대 지하공간 개발사업 추진' 사업비로 2억 3,676만원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주민편익시설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용역비 2,000만원, 예비비로 16억 9,888만 9천원을 편성하였음.
- 환경과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에너지 절감 인프라 구축' 사업비로 1,650만원을 편성하였음.

## 6. 명시이월 사업 현황

(단위: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예산액	이월액	사유
환경과	공공시설(중양도서관)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200,000	200,000	서울시 자치구 태양광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나, 사업비 교부지연으로 특별교부금을 2018.10에 받음에 따라 이월하여 추진



## IV. 2019년 도시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 1.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규모

#### 가. 기금조성현황

(단위:천원)

2018년도말 조성액 ㉠	2019년도 조성계획			2019년도말 조성액 ㉡ = ㉢ + ㉠	비 고
	수입 ㉢	지출 ㉣	증감 ㉤ = ㉢ - ㉣		
2,014,487	399,500	991,950	△592,450	1,422,037	

#### 나. 자금운용(수입·지출)계획

##### 1) 수입계획

(단위: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b>수 입 합 계</b>	<b>2,413,987</b>	<b>2,166,648</b>	<b>247,339</b>
세외수입	399,500	377,000	22,500
경상적세외수입	94,500	107,000	△12,500
수수료수입	59,500	60,000	△500
이자수입	35,000	47,000	△12,000
임시적세외수입	305,000	270,000	35,000
과징금및과태료등	305,000	270,000	35,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014,487	1,789,648	224,839
보전수입등	2,014,487	1,789,648	224,839
예치금회수	2,014,487	1,789,648	224,839

##### 2) 지출계획

(단위: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비교증감
<b>지 출 합 계</b>	<b>2,413,987</b>	<b>2,166,648</b>	<b>247,339</b>
품격있는 도시경관 조성	991,950	323,450	668,500
선진광고문화 조성(옥외광고정비기금)	991,950	323,450	668,500
간판개선사업	991,950	323,450	668,500
재무활동(도시경관과)	1,422,037	1,843,198	△421,161
보전지출(옥외광고정비기금)	1,422,037	1,843,198	△421,161
여유자금 예치	1,422,037	1,843,198	△421,161

-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별도의 기금으로서 재원은 수수료, 과태료, 예치금회수 등으로 조성되며 '간판개선사업' 9억 9,195만원, 여유자금 예치로 14억 2,203만7천원임.

## V. 검토결과

### 1. 검토의견

- 2019년도 예산안은 부동산 경기 변동성으로 인하여 주택가격 인상 및 신축건물 증가로 재산세는 증가되나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감소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복지확대 정책에 따라 의무적 지출 증가와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 증가로 경직성 경비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 2019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25억 3,176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억 6,975만 1천원 대비 2.51%인 6,201만 6천원이 증가하였음. 주요 세입 과목은 임시적세외수입인 이행 강제금 및 과태료로서 건축법 등 법령위반에 따른 수입임. 국고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 174.61%인 1억 7,391만 1천원이 증가된 반면, 경상적 세외수입인 징수교부금수입이 34.31%인 1억 9,160만 7천원 감액됨.
- 금번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의 일반회계는 부서별 신규사업을 제외하고는 가용재원 내에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에서 계상하였음.
- 그러나, [주택과] 재개발정비구역 계획수립 용역,  
[도시계획과] 생활권계획 반영을 위한 도시관리방안 수립 용역,  
[도시경관과]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  
[건축과] 건축위원회 운영 위원회 참석수당,  
[환경과]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각종 에너지 절감 인프라 구축사업,

[공원녹지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비 보상비,

공기청정숲 조성, 걷기좋은길 10선 선정 사업 등은 그 비용을 산정할 때 정부 표준품이나 단순하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정한 사업비 범위 내에서 계상하는 방법은 지양하고 세밀한 계획 속에서 사업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산정하여 경제적인 우수 사례 및 원가분석 등을 통해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특별회계는 예비비 및 에너지 절감 인프라 구축 등으로 편성하여, 세입 재원 한도 내 편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신규 사업의 경우 효과성 및 사업 지속 가능성, 계절적 요인 및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파악하여 심도 있게 분석해야 할 필요성은 있어 보임.
- 또한, 국·시비보조금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초기부터 당해 사업의 타당성 분석 등 보다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보조금 예산을 받아 사용하지도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향후 국·시비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옥외광고정비기금은 특정사업을 위해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자금이므로, 기금운영 성과를 통해 실시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을 세밀하게 구성하고, 사업비 산출근거 또한, 매년 반복된 단가에 수량을 계상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간판제작의 최근 기술력이 반영된 원가산정을 하고 여유 자금 예치활동에 있어서도 다양한 재정활동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참고자료]

### □ 도시환경국 신규사업 현황

(단위: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편성사유
주택과	재개발정비구역 계획수립 추진	300,000	0	300,000	아현동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수립용역비
도시계획과	도시재생사업 추진	300,000	0	300,000	골목길 및 도시재생사업추진
	생활권계획 반영을 위한도시관리방안 수립 용역	201,000	0	201,000	역세권 주변 토지이용 계획 검토 등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 관리 방안 수립 용역비
	인력운영비	46,843	0	46,843	도시행정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신규 채용
도시경관과	도시디자인 기획 및 개발	150,000	0	150,000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비
환경과	미세먼지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보급	71,000	0	71,000	미세먼지 비상조감조치 발령시 건강취약계층 및 현장근로자의 건강 보호
	환경오염원 관리 및 공해단속	72,000	0	72,000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에너지절감 인프라 구축사업	500,050	0	500,050	에너지절감 인프라 구축 -구민체육센터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건물안전진단(태양열,태양광) -구립복지시설 쿨루프 시공사업
공원녹지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비 보상	2,000,000	0	2,000,000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실효대비 보상금
	하천변 관리	588,000	0	588,000	2018년 선형의 숲 3단계 구간조성비(국고보조금)가 교부되었으나, 3구간 사업 추진이 어려워 선형의 숲과 경의선 숲길을 연결하는 하천변 생태숲 조성으로 변경
	공기청정숲 조성 시설비및부대비	202,400	0	202,400	신규 사업 반영에 따른 시설비 증가
	마포,건기좋은길 10선 선정	330,000	0	330,000	건기좋은길 10선 대상지에 대한 정비공사 비용
	산림재해일자리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재단】	22,979	0	22,979	산림병해충전문예방재단 인부 운영
	산림서비스증진 【숲해설 운영】	24,000	0	24,000	국·시비 매칭으로 신규사업 편성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 제36조(예산의 편성)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